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_ 02.880.8055

홈페이지_ <http://help.snu.ac.kr> 이메일_ helpyou@snu.ac.kr

45대 서울대 총학생회

위치_ 학생회관 307호 전화번호_ 02.880.5223

홈페이지_ <http://we.snu.ac.kr>

대학인을 위한 성 지침서'는 서울대학교의 모든 신입생·재학생들에게 배포됩니다.

대학인을 위한 성 지침서

나를 사랑하는 법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45대 서울대 총학생회



CONTENTS

□ 나를 사랑하는법!	2
□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가요?	4
□ 네가 내 생각을 안다구? 어떻게??	6
□ 이제 서로를 잘 알아보려는 노력을 시작해요	8
□ 성폭력이란?	12
□ 여성의 YES와 NO?	14
□ 학내 성폭력, 심각한가요?	16
□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	18
□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두울	20
□ 성폭력을 당했어요! 어떡죠?	22
□ 성폭력 사건, 꼭 해결하고 싶어요!	24
□ 우리학교에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학칙이 있나요?	26
□ 상담소는요?	30



나를 사랑하는 법!

이전까지의 딱딱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공간.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곳. 낭만적인 연애에 대한 환상 역시 감초처럼 자리하고 있는 공간.

이처럼 대학은 우리에게 낭만적인 환상들을 심어주는 공간이지요. 그 중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은 대학생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가능합니다.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사와 욕구를 이해할 때에만 진정으로 누군가와 '더불어'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을 통해 남을 만나는 것 역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독 이 부분에서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만

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욕구를 무분별하게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욕구를 불필요하게 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나의 몸을 사랑하는 속에서 남의 몸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해요. 그것이 나의 몸과 인격이 존중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을 통해 타인을 만날 때, 타인의 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타인의 몸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것에서부터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관계맺음을 시작해봐요!!



먼저 나의 몸을 사랑하는 속에서 남의 몸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해요.



네 몸이
너!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아?

이래도 될까...?

♀

서로의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연스런 성적인 만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너무 작은게 아닐까...?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잘못 알고

누구나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쯤 성교육을 받아보기는 했지만,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해 보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성교육을 받아도 여학생들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월경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반면 남학생들은 포르노, 성인 잡지 등을 통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4

▶▶▶ 나를 사랑하는 법

있지는 않은가요?

이렇게 형성된 서로의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연스런 성적인 만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온일하고 야해서 숨겨야만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자연스런 부분 중 하나로서 타인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장소랍니다.

◀◀◀ 나를 사랑하는 법 5

중요면서 내숭떨기는...

전과 싫은데...



타인의 생각을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내 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따라 상대방을 나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대학에서의 보다 평등하고 주체적인 관계맺음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그런 고정관념부터 훌훌 털어버려요. 그리고 솔직한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서로를 잘 알아보려는 노력을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은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따라 상대방을 나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네가 내 생각을 안다구? 어떻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를 밝히는 예로 보지 않을까..

좀 민망한걸..



이제
서로를
잘
알아보려는
노력을
시작해요

‘성적’ 관계 맺음이라구요? 성적 ‘관계 맺음’ 입니다!

성적 관계맺음이라고 하면 무언가 은밀하고 아련한 것을 떠올리시나요?

성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 우리가 ‘섹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떠올리는 묘한 흥분과 긴장. 이런 것만을 성적 관계맺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모든 일이 영화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이끌리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지요.

상대방과의 성적 관계는 오히려 굉장한 긴장 속에서 얼렁 통똥 일어나기 쉽습니다.

현실은 아름다운 영화가 아니라 군데군데 장애물이 놓여 있는 달리기 경주와 같아요.

다른 어떤 일도 그렇겠지만, 성적 관계맺음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오해가 생기고 누군가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세심히 배려하고, 자신의 의사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욕구나 의사만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올바른 성적 관계맺음입니다.

솔직한 대화에서부터 우리 시작해요~

☆ 내 의사를 정확히 알기

모든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잘 모르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런 것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나는 손만 잡고 싶은데, 상대방은 키스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럴 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서로가 원치 않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표현하려고 노력해봐요. 내가 왜 손만 잡고 싶은지, 혹은 나는 왜 키스를 하고 싶은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또, 자신이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맘대로 하지 않게 말이지요.

☆ 상대방의 의사 존중하기, 배려하기

서로의 욕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로의 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경우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당연히 그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모두에게 즐거운 것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불쾌하고 폭력적인 경험만 될 뿐이에요.



그 불쾌한 경험이
우리가 말하는 성폭력일 수 있어요,
그러면 성폭력에 대해
더 알아보까요?



성폭력이란?

지금까지 성폭력이란 단어를 들으면 컴컴한 골목길과 낯선 사람에 의한 강간(rape)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성폭력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에 의해 친숙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연인이나 데이트 상대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연인이 내려하지 않는데도 키스를 했다면 성폭력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추행 뿐 아니라 성적 농담이나 야릇한 눈빛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너무 짝사랑해서 그 사람이 싫는데도 매일 쫓아다니고, 구애하는 것도 성폭력에 속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드나드는 과방 컴퓨터에 소위 음란 사진을 깔아놓는다면 그것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 성폭력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누군가가 나의 몸, 나의 결정권에
상처입혔다면,
그것은 명백히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은 상대방의 몸과 의견,
'성적 자율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것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 행동이나 요구를 의미하는 것이란 거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즉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유독 성과 관련된 것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가 "싫어" 해도 사실은 "좋다"는 뜻이라고 오해하는 것도 그래요.

나라의 NO를 무시하지 말자!



여성의
YES와 NO에
대한 만화





학내 성폭력, 심각한가요?

성폭력은 나와 거리가 먼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학내 성폭력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 여학생 중 1/3이 성폭력을 직접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명중 한 명이라니 참 엄청난 숫자죠?

서울대는 어떨까요?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된 사례는 20건 내외이며, 학내 여성모임인 관악여성모임연대에 들어온 사례는 10건이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해도 대응하는 것을 꺼리고 아무일 없는 듯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들은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건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며 스토킹이나 언어성희롱도 있었답니다. 사건 장소는 술자리, 자취방, MT 장소, 골목길, 비디오파 등 다양했구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

즐거운 술자리네...



선배, 이러저러해서.
좀 도와주세요.

대처 #1



대처 #2



편지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쓰세요.
나중에 증거물이
될 수도 있어요.

미안하다. 기분 나빴다니...
별 뜻 없었어.



또는,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참, 사과를 안하면
또 그릴 수 있으니
강력하게 대처해야 해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두울**

1차 음식점



2차 단란주점



성폭력을 당했어요! 어쩌죠?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는 절대 샤워를 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산부인과로 가서 증거를 채취해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생겼다면 사진을 찍어두어야 하고 당시의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물론 입었던 옷이나 소지품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믿는 친구와 상의하면 마음을 다소 가라앉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서울대 성폭력 상담소나 외부 상담기관을 찾으세요.



:: 서울대 성폭력 상담소

전화번호_ 02.880.8055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홈페이지_ <http://help.snu.ac.kr>

이메일_ helpyou@snu.ac.kr

:: 외부 상담 기관 소개

■ 한국성폭력상담소_ 02.529.4271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_ 02.739.8858

<http://www.womenlink.co.kr>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문 산부인과

김현식 김동구 둔촌동 김현식 산부인과_ 02.488.4011

민용기 서초구 서초동 함춘여성클리닉_ 02.522.0123

성폭력 사건, 꼭 해결하고 싶어요!

성폭력 사건 해결절차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들은 복수로 행하거나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습니다.

→ 직접 대처

사건이 아주 경미한 수준이거나 가해자가 선의로 가벼운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될 때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계속하길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써서 사과를 받습니다.

→ 제 3자의 중재

가해자와의 사이에 제 3자를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제 3자가 입회한 자리에서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거나, 가해자의 사과문을 제 3자가 받아서 피해자에게 건네준다거나 하는 것이지요. 이 방법의 장점은 증인이 자연스레 확보되어 당사자들 이외에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지요.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됩니다.



→ 자치규약

서울대의 몇몇 단대와 과에는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해결할 경우에는 보통 단위내 장(長)이 중재를 하게 되며, 여성모임 단위가 해결을 돕게 됩니다.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은 성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휴학이나 공식사과문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으며, 단위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효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위험도 크므로 해결하는 구성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요합니다.

→ 서울대 상담소

상담소를 통해 중재 혹은 학칙에 따른 징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 기록이 남게 되며,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 법적 해결

법적 해결은 민사, 형사적 방법이 있습니다. 힘들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토요일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학교에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학칙이 있나요?

서울대학교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6. 30 규칙 제1156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치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설치령과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해자인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4 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주의의무)

-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권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성희롱·성폭력상담소)

- ① 서울대학교 총장은 성희롱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희롱·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처리를 담당하는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 ② 상담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및 상담소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③ 소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부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소장)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7 조 (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담소장 및 상담소 부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5인 이내의 학생대표와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5

- 인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내규의 제정 및 개정
 2. 상담소의 예산 및 결산
 3. 기타 성희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 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5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조사위원회)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상담소 부소장이 되고, 위원은 소장의 조사의뢰가 있을 때 부소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 ③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신고)

-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③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0 조 (조사와 상담)

- ① 소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게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신고가 접수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 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

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소장은 30일 이내에 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징계)

- ① 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벌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12 조 (운영세칙)

소장은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상담소는요~

서울대 성폭력 상담소는 2000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상담 및 사건 조사·처리 업무에서 성폭력 예방 사업까지 맡고 있습니다.

상담소로 사건을 신고한 후 처리되는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는 반드시 연속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전화, 직접방문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사건 조사

사건이 신고되면 상담소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조사위원장은 상담소 부소장이며, 조사위원은 5인 내외로 외부전문가,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진술 조사와 참고인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성폭력인자의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보고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지게 되구요. 조사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1~2개월, 지연되면 6개월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중재 혹은 징계

양측을 고려하여 중재나 징계 요청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상담소는 이미 피신고인이 일 년 휴학을 하도록 중재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징계를 강력하게 원하거나 피신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중재가 이루어지기 힘들습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수준으로 징계를 심의하여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징계는 근신에서 제명까지 다양하며, 실제로 피신고인이 상담소의 징계요청으로 제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인을 위한 성 지침서

| 제작 및 발행 |

서울대 성희롱·성폭력 상담소 & 총학생회 여성국

| 집필 | 김계현, 김은경, 안은정, 이슬기, 김정연

| 삽화 | 최선경

| 편집 | 안은정, 이슬기

| 디자인 | 이성희

| 참고책자 |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당당한성, 안전한성, 즐거운성〉

| 인쇄일 | 2002. 2.

| 발행일 | 2002. 2.